

목록

양평 휴먼빌 센트럴시티 단지내상가 공급공고(정정안)..... 1
양평 휴먼빌 센트럴시티 단지내상가 공급공고(안).....2

2022년 06월 30일 일신건설(주)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동1BL, 양평 휴먼빌 센트럴시티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아 래 -

<기존>

▣ 공급규모 및 공급금액

구 분	면 적(m ²)					분양 내정가(원)				비고
	전 용	공 용	분 양	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 계		
근생1	101호	29.0500	39.5678	68.6178	12.68	23,474,900	234,749,000	53,176,100	311,400,000	-
	102호	29.0500	39.5678	68.6178	12.68	23,474,900	234,749,000	53,176,100	311,400,000	-
	103호	29.0500	39.5677	68.6177	12.68	23,474,900	234,749,000	53,176,100	311,400,000	-

<정정>

▣ 공급규모 및 공급금액

구 분	면 적(m ²)					분양 내정가(원)				비고
	전 용	공 용	분 양	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 계		
근생1	101호	29.0500	39.5678	68.6178	12.68	53,176,100	234,749,000	23,474,900	311,400,000	-
	102호	29.0500	39.5678	68.6178	12.68	53,176,100	234,749,000	23,474,900	311,400,000	-
	103호	29.0500	39.5677	68.6177	12.68	53,176,100	234,749,000	23,474,900	311,400,000	-

양평 휴먼빌 센트럴시티 단지 내 상가 공급공고

▣ 입주자모집 신고수리 : 양평군청 건축과 - 66307 (2022. 06. 3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 규정에 의거 양평군 주택과 입주자모집신고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동1BL, 양평 휴먼빌 센트럴시티 단지 내 상가

▣ 공급규모 및 공급금액

구 분	면 적(m ²)					분양 내정가(원)				비고
	전 용	공 용	분 양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 계		
근생1	101호	29.0500	39.5678	68.6178	12.68	53,176,100	234,749,000	23,474,900	311,400,000	-
	102호	29.0500	39.5678	68.6178	12.68	53,176,100	234,749,000	23,474,900	311,400,000	-
	103호	29.0500	39.5677	68.6177	12.68	53,176,100	234,749,000	23,474,900	311,400,000	-

※ 당 상가는 노면을 기준으로 실사용 상 지상에 해당하나 공급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는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표기되므로 지하 1층으로 표기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용도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허가(신고)관청에서 최소 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가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방법 : 점포별 내정가 공개 최고가 경쟁입찰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내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경쟁입찰제임.
- 1인당 입찰신청 점포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개의 점포를 낙찰 받아 계약할 수 있으나, 1인이 동일 호실에 중복 신청은 불가함.
- 입찰보증금 : 각 호실별 일금 **일천만원(₩10,000,000)**
- 입찰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숫자가 다르게 기입된 경우에는 한글을 우선함.
- 입찰가격은 십만원 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십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 입찰보증금은 낙찰 실패의 경우에는 반환되지만, 낙찰 후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하며 낙찰 후 계약 포기 시에는 당사에 귀속되므로 유의 바람.(입찰보증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 하지 않음)

▣ 입찰 유의사항

- 입찰 신청자는 공급공고, 점포시설 용도 및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신청자에게 있음.
-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최고 입찰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입찰은 해당시간까지 입찰서류를 입찰봉투에 넣으신 후 지정된 입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입찰 마감 일시 이후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호실(점포)별 내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응찰자가 1인일 경우라도 내정가격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 낙찰자 외의 입찰보증금은 환불계좌 명의자와 입찰자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하며, 계좌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증권사 계좌 등)의 제출로 인한 환불지연, 미지급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환불계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 환불 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경과이자 는 지급하지 않으며, 환불기간은 금융기관 등의 기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동일금액 최고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금액 응찰자를 대상으로 당사가 정하는 방식의 추첨으로 즉석으로 결정함.
- 응찰가격이 당사 내정가격 미만일 경우에는 유찰로 하며, 유찰된 점포 및 미입찰 호실은 당사에서 임의로 공급함.
- 제출된 입찰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교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입찰 희망금액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고가 입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책임이오니, 입찰 희망금액 결정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개별 입찰가격, 차점자 및 경쟁률 등은 공개하지 않음. 단 경쟁의 경우 개찰 및 낙찰자 발표 시 최고가 낙찰자만 공개함.
- 입찰금액은 호실 당 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재하여야 함. (총 금액이 아닌 평당가 등은 무효 처리)
- 낙찰자는 계약일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낙찰은 무효(유찰)이고 입찰보증금은 공급자에 귀속됨.

□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시	구 비 서 류										
<p>신청접수 및 입찰</p>	<p>2022.07.07(목) (10:00~14:00)</p>	<p>▶입찰자격 : 분양공고일(2022년 06월 30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청약통장 및 세대주와 무관함</p> <p>▶입찰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6-31, 황남빌딩 2층</p> <p>▶입찰보증금 : 각 호실별 일금 일천만원(₩10,000,000)</p> <table border="1" data-bbox="612 495 1394 595"> <thead> <tr> <th>금융기관</th> <th>계좌번호</th> <th>예금주</th> </tr> </thead> <tbody> <tr> <td>기업은행</td> <td>475-000003-01-209</td> <td>일신건영(주)</td> </tr> </tbody> </table> <p>※ 현장에서는 별도로 입찰보증금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입찰 신청 전 미리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p> <p>▶구비서류 : 아래의 각 서류는 입찰 점포 당 1부씩 제출</p> <table border="1" data-bbox="612 730 1394 1021"> <thead> <tr> <th>개인 신청자</th> <th>법인 신청자</th> </tr> </thead> <tbody> <tr> <td> ① 입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② 입찰자의 도장 ③ 입찰자의 환불통장 사본 </td> <td>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⑤ 법인명의 환불통장 사본 </td> </tr> </tbody> </table> <p>※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 - 입찰신청자의 인감증명서(위임용) 1부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p>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475-000003-01-209	일신건영(주)	개인 신청자	법인 신청자	① 입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② 입찰자의 도장 ③ 입찰자의 환불통장 사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⑤ 법인명의 환불통장 사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475-000003-01-209	일신건영(주)										
개인 신청자	법인 신청자											
① 입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② 입찰자의 도장 ③ 입찰자의 환불통장 사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⑤ 법인명의 환불통장 사본											
<p>개찰 발표</p>	<p>2022.07.07(목) (14:00~15:00)</p>	<p>▶발표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6-31, 황남빌딩 2층 - 내정가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가격 응찰자 대상으로 추첨</p>										
<p>계약</p>	<p>2022.07.07(목) (15:00~17:00)</p>	<p>▶계약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6-31, 황남빌딩 2층</p> <p>▶구비서류 : 아래의 각 서류는 계약 호실 당 제출</p> <table border="1" data-bbox="612 1464 1394 1789"> <thead> <tr> <th>개인</th> <th>법인</th> </tr> </thead> <tbody> <tr> <td> ① 계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상가공급계약용)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td> <td>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2부 ③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 </td> </tr> </tbody> </table> <p>※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계약위임용) 1부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p>	개인	법인	① 계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상가공급계약용)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2부 ③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개인	법인											
① 계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상가공급계약용)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2부 ③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											
<p>유찰자 환불</p>	<p>낙찰자 선정일 이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p>	<p>- 입찰 신청 접수 시 등록한 은행계좌로 송금(입찰자 본인 명의 계좌) - 입찰보증금 환불은 입찰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진행함</p>										

▣ 분양대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시기	계약 시	2022년 10월 17일	입점지정일 (2023년 02월 예정)
납부비율 (낙찰금액 기준)	10%	10%	80%

-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낙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대출 알선은 없으며, 낙찰자는 자력으로 총 공급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별도의 선납할인은 없음.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	농협 317-0020-4308-11	일신건영(주)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입금 호실 필히 기재, ex) 상가 101호 → 입금자명 : 상가101호)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점예정일

- **2023년 02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입점)예정일은 앞당겨질 수 있음)
- 실 입점일이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당첨된 점포에 대한 영업허가, 등록, 인가, 용도 변경 등 상가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당사는 업종보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허가(신고)관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가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영업업종은 점포별로 표시된 용도 내에서 가능한 업종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개업업종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종합입간판은 준공 전까지 관할 지자체와 사전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상가 간판을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음.
- 상기 계약일에 미계약된 점포의 경우 별도의 공고 없이 필요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점포의 면적 분할, 합병 등의 방법으로 임의 분양하며, 이에 따라 용도 및 점포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매수인은 입점지정기간 최초일까지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 입점지정기간 최종일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는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하여야 함.
-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별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함.
- 상가 주차장은 근생1 107호~109호 후면부에 지정되어 있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상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음.

- 낙찰자(계약자) 및 상가 임차인은 옥상 및 공용공간을 창고 등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당사에서 준공 받은 상태로 인수하여야 하며 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간판, 가스배관, 전기, 냉난방 등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 등은 매수인의 부담임.
 - 신청자는 분양광고, 유의사항,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 기타 상가분양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전용면적은 건축법규에 의해 벽체중심선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 본 상가는 실입점자를 위하여 분양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본 단지 내 상가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인 "을"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신건영(주) (02-480-3192)로 문의 바랍니다.

▣ 분양보증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함.

구 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분양보증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186,840,000 원	제 01212022-101-00038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제21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됨.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시행사/시공사	비고
회사명	일신건설(주)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2(의정부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655477	
전화번호	02-480-3192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일신건설(주)** (**02-480-3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도 내 단지 내 상가



※ 상기 CO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반드시 건물주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CO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분양 대상물을 축소 표현하여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CO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조경식재, 시설물 등, 외부 색채, 벽체 마감, 및 디테일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 권은 등별, 층별로 차이가 있으며, 저층 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에 향해를 받을 수 있고, 단지 주변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등 호수 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반드시 건물주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